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1. 사건의 개요

글로웍스는 본래 영위하던 학습기 제조 및 홍보대행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2009년 4월 경 언론 등을 통해 몽골의 금광업체 지분 50%를 인수하였으며 회계법인이 평가한 이 금광업체에의 예상매출액이 한화로 약 3조 3,700억 원에 이르고 2009년 하반기부터 약 40%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등의 정보를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웍스의 주가는 불과 두세 달 만에 약 5배(4월 28일 545원, 8월 2,690원)로 상승하였고 월간거래량은 무려 6,246배(4월 99,235,000주, 7월 619,848,219,000주)나 증가하였습니다.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는 모두 허위였고 글로웍스 대표이사 박성훈 등은 위와 같이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함에 따라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7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검찰은 2011년 5월경 글로웍스의 대표이사인 박성훈(44)과 관련자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현재 글로웍스는 2011년 6월 16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태이고,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된 다음 29일 최종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위와 같은 허위정보가 유포되기 시작한 2009년 4월 29일부터 그 불공정거래행위의 진상이 검찰수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드러난 2011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글로웍스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글로웍스와 대표이사 박성훈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법적 근거

가. 시세조정의 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177조(시세조정의 배상책임)>

①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정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나.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偽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분

-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매매거래를 하거나 위탁한 투자자입니다.
- 본건에서는 금광개발에 관한 허위정보가 처음 공시된 2009. 4. 29.부터 최근 검찰의 기소로 이러한 정보가 허위라는 것이 드러난 시점인 2011년 5월경까지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일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소송비용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은 **피해액의 1%** (부가세 포함, 이하 같습니다, 다만, 거래정지시점까지 계속 보유 중인 잔고에 대해서는 시가를 ‘0’으로 보아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1심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포함된 것이고**, 다만 향후 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 등은 그 시점에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투자손실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만원’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2009. 4. 29.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13%, 대법원부터는 15%의 성공률을 보장하며 담당하시게 됩니다.

5. 소송에 참여하시는 방법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자 하실 경우 (1) 위임계약서 2부, (2) 위임장 1부, (3)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 (4) 증권사에서 발급받으신 글로벌스 거래내역서(보유중인 주식이 있을 경우 잔고증명서 포함)를 2011. 7. 8.까지 저희 사무실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과 (2)서류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을 계산하여 개별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해당 소송비용을 신한은행 100-027-271269 계좌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저희는 글로벌스 주가조작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7월 중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송성현 변호사 또는 박현희 과장 (☎ 02-537-95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4.

법무법인 한 누리

대표변호사 김주영

위 임 장

수임인 : 법무법인 한 누리 (www.hannurilaw.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지파이브 센트럴프라자 431호

(Tel : 02-537-9500, Fax : 02-564-9889, hannuri@hannurilaw.co.kr)

※ 위임인 인적사항

투자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추후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으시면 반드시 이메일주소를 알려 주시고, 괄호에 (O)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음 ()

※ 승소금 수령시 지급받으실 계좌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	--	----------	--	-----

상기 위임인은 이른바 글로웍스(주)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1심, 2심 및 3심)에 관하여 상기 수임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와 같은 권한을 수여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민사조정신청 포함), 보전처분의 제기,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복대리인의 선임,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상소의 제기 및 수행, 강제집행 등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
2. 글로웍스(주)의 주가조작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 피해자로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행위
3. 상기 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행위(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목도장을 새겨 위임장에 날인하는 행위도 포함)

2011. . .

위임인

(인)

*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사 건 위 임 계 약 서

의뢰인(‘갑’) :
수임인(‘을’) : **법무법인 한누리**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갑은 아래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 라 한다)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 건 명	손해배상(기)
당 사 자		상 대 방	글로벌스(주) 등

제2조 (위임사무의 범위)

‘갑’ 이 ‘을’ 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로 한다.

제3조(수권범위)

‘갑’ 은 ‘을’ 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기재된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지위)

‘을’ 을 변호사로서 법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을’ 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 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금)

- (1) ‘갑’ 은 ‘을’ 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본안소송 소송비용과 착수금 명목으로 투자손실액의 1% (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거래정지시점까지 계속 보유 중인 잔고에 대해서는 시가를 ‘0’ 으로 보아 투자손실액을 평가한다)를 지급한다. 단, 위 투자손실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갑은 을에게 본안소송 소송비용과 착수금 명목으로 3만원으로 한다. 이 금액은 먼저 인지대 등 소송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1심판결 후 소요된 비용과 정산하여 나머지를 착수금으로 보기로 한다.
- (2) 착수금은 ‘을’ 의 변호사 또는 그 보조인력들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 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중재, 조정, 당사자의 사망, 소송물의 양도, 위임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경우에는 ‘갑’ 이 그 반환을

